

방송영상콘텐츠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

2018. 1.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책임: 권금상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혜영 문화협동조합 모다 대표

- 목 차 -

1장. 연구개요	1
1.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 제작의 필요성 및 방향	1
1) 다문화 수용성이란	1
2) 안내서의 필요성과 목적	3
2. 다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시 단계별 가이드라인	5
1) 제작 준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5
2) 제작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6
3) 후반 작업에서 고려할 사항	8
2장. 콘텐츠 제작에 유용한 다문화의 이해	8
1. 한국 다문화 현황	8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8
2) 결혼이민자 현황	9
3) 이주노동자 현황	10
4) 북한이탈주민 현황	11
2. 다문화 관련 용어와 의미	12
1) 문화다양성	12
2) 결혼이민자	13
3) 이주노동자	13
4) 북한이탈주민	14
5) 재외동포	15
6) 난민	15
3장. 다문화 관련 가이드라인과 심의	16
1. 해외의 방송 가이드라인	17
2. 국내의 방송 가이드라인	22

4장. 다문화 콘텐츠의 미디어재현 현황과 모니터링 분석 사례	25
1.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 현황	25
2. 다문화 관련 방송영상 모니터 분석 사례	28
1) TV 드라마프로그램	28
2) TV 시사/교양프로그램	31
3) TV 예능프로그램	40
4) 광고	50
3. 모니터 분석 결과	55
1) TV 드라마프로그램	55
4) TV 시사/교양프로그램	56
3) TV 예능프로그램	56
4) 광고	57
5장. 결론	57
참고문헌	59
부록	61

- 표 목 차 -

[표 1] 결혼이민자 배우자 연도별 증감 추이.....	10
[표 2]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10
[표 3]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현황.....	10
[표 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	11
[표 5] 2017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2

- 그림 목 차 -

[그림 1] 다문화수용성 하위체계 및 구성 요인.....	7
[그림 2] 2017 국내 체류 외국인현황.....	9
[그림 3] <그 형제의 여름> 장면 분석.....	29
[그림 4] <비밀> 장면 분석.....	30
[그림 5] <비밀>의 장면 분석 2.....	31
[그림 6] <다문화 고부열전> 장면 분석.....	32
[그림 7] <다문화 고부열전> 장면 분석 2.....	34
[그림 8] <다문화 고부열전> 시청자 게시판 항의 내용.....	35
[그림 9] <이웃집 찰스> 장면 분석.....	37
[그림 10] <이웃집 찰스> 장면 분석 2.....	38
[그림 11]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장면 분석.....	40
[그림 12] <비정상회담> 장면 분석.....	41
[그림 13]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장면 분석.....	43
[그림 14]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장면 분석 2.....	44
[그림 15] <모란봉 클럽>장면 분석.....	45
[그림 16] <모란봉 클럽>장면 분석 2.....	47
[그림 17]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장면 분석.....	48
[그림 18]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장면 분석 2.....	49
[그림 19] <편견에서 시작된 친절은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장면 분석..	50
[그림 20] <다양한 대한민국> 장면 분석.....	51
[그림 21] <북한이탈주민, 우리의 착한 이웃> 장면 분석.....	52
[그림 22] <다문화 가족, 소중한 인재> 장면 분석.....	53
[그림 23]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장면 분석.....	54

1장. 연구개요

1. 다문화 수용성 제고 안내서 제작의 필요성 및 방향

1) 다문화 수용성이란

2017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백 여만 명 시대, 한국 사회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한다(201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법무부). 이미 한국은 더 이상 단군신화를 근간으로 하는 단일민족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인종차별 수준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단계에 속한다. 인종차별 수준 측정에서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 중 36.4%가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둘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사회가 오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과 동남아시아권에서 온 이민자의 급증,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 등이 높은 수준의 인종차별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인들이 높은 교육 수준과 국가 내에서 민족적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과 편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다문화사회와 관련지어 볼 때 배타적 다문화정책과 미디어 재현에서 이주민의 열악한 삶, 부적응의 문제를 강조하며 수혜집단으로 그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권금상, 2013).

다문화는 주로 선진 자유국가들의 다양한 이주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었으므로 각 국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도 상이한 모습으로 형성되어왔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 등으로 이루어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인종문화갈등이 발생되었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담론이 대두되었다. 다인종·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시도는 1970년대 호주·캐나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문화적 생존과 인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정치가 실시되었다. 다문화주의는 국민통합과 사회통합 같은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통해 소수민족과 집단의 고립화를 막고 소외방지를 목표로 한다. 다문화주의는 테일러(Taylor)가 주장한 ‘차이의 존중’과 킴리카(Kymlica)의 '다문화주의적 시민권'이 중요한 철학적 기초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 말 경에 발생한 IMF사태에 따라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배치되고 공동화된 지역사회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외국인 여성배우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1980년대부터 급증

한 외국인들의 존재가 사회적 현상과 미래사회의 전망 요소로 결합됨으로써 다문화주의가 급부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펴왔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 붙어 닳친 경제난과 식량난 이후 탈북인이 한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17년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명을 웃돌고 있다(2017 북한이탈주민통계, 통일부). 그러나 한국에 이주한 다문화 구성원들은 가난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킴리카(Kymlica)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 184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와 함께 단일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한핏줄 - 한민족 - 한문화’ 신화를 대표하는 나라이다(오경석, 2007).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다(황정미 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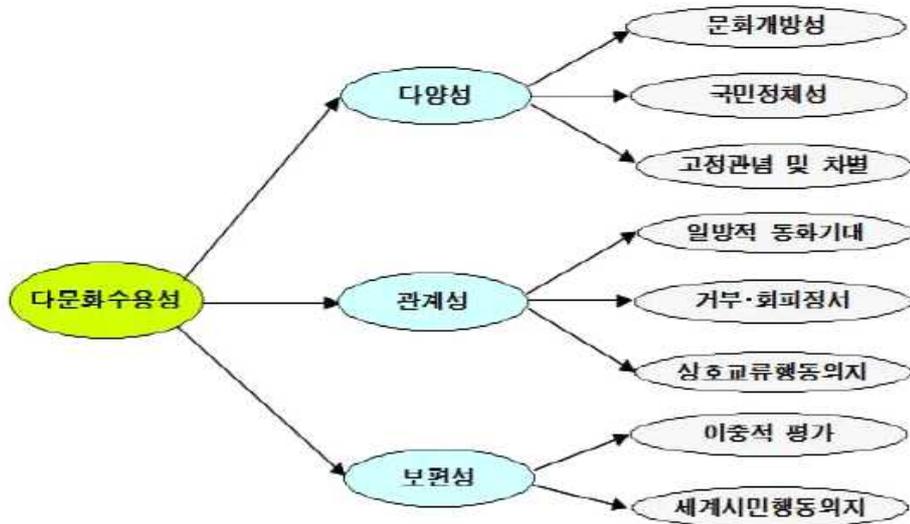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 다문화 수용성지수는 51.17점으로 나타나 다문화수용성 상위 20%에 속한 국민의 평균지수 70.89점과 비교했을 때 외국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안상수 외, 2012).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편견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뜻하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0점대로 저조한 수치를 보인다(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향성, 국민정체성,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방성,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타문화와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등으로 구성되는 심층적인 개념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5). 다문화수용성의 체계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영역으로 나뉘며 영역에 따른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세계 시민권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보편적인 인식과 실천적 태도를 총칭한다.

다문화를 둘러싼 쟁점에서 시민사회와 이주민 당사자들은 한국인들이 가진 폐쇄적 수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종 및 사회적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사회는 국제사회로부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로 권고사항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의 매매성 결혼 문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자녀들의 무국적 문제, 인종차별 언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과 갈등은 다른 인종과 민족이라는 외국인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인식 차별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 선주민들에게서 나타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차별적 인식은 다문화수용성 증진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고정된 주체로 인식하거나 이들을 동화주의 관점에서 인구정책, 노동시장의 요소, 혹은 정책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관념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문화적 태도와 인식이 필요하다.

[그림 1] 다문화수용성 하위 체계 및 구성 요인



안상수 외, 2012:75.

2) 안내서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인들의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은 한국사회가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재생산하는 것이 미디어라는 비판도 크지만 그만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지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교육학 관점에서 미디어는 가장 파급력이 큰 사회교육 매체로 꼽힌다. 미디어는 타인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디어의 재현에서 이주민들을 그리는 모습은 시대 별로 달라져왔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미디어에 재현된 외국인의 모습은 범 죄자, 한국인의 자리를 뺏는 존재 등으로 그려졌다. 왜곡된 외국인 이미지 확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

해 운동을 벌여온 결과, 변화는 가져왔지만 보편적인 일상 노동자의 생활을 소개하기 보다는 한국인에게 당하는 ‘피해자’나 ‘희생자’의 이미지로 조명하게 되었다(한건수, 2003).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 성찰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인권 유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대중매체였다(박수미 외, 2008). 미디어가 외국인의 인식에서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제공원이라는 연구 결과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을 차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사회교육적인 기능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권금상, 2010).

교육학자 반두라(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은 사람들이 타인을 관찰하는 것을 통하여 태도, 가치, 정서적 성향, 새로운 행동 양식을 획득한다고 설명한다(Bandura, 1989: 21). 매개사회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이론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미디어가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주인공과의 친밀하면서도 대면적인 연합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행동양식이 변화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개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다수가 대면하기 어려운 소수와 접촉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Schiappa, Gregg & Hewes, 2005: 97).

그간 한국의 방송에서 만들어진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알리고자 차별을 드러내는 전략이 활용되어왔다면, 다문화사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과 공생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를 발굴할 시기이다. ‘차별(discrimination)’이란 다른 집단의 성원에게는 허용되는 기회를 특정한 집단의 성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지칭한다(Giddens, 2001). 차별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게는 허용되는 기회를 특정한 집단의 성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이 발효되어 한국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수용성이 담보된 방송영상 콘텐츠의 제작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수용성이 사회전반적인 인권의식, 타인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근간으로 하는 다문화주의 정신에서 배태되어 왔으므로 수용성의 증진은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실천을 동반하게 하는 주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다문화를 주제로 다루는 단일 프로그램에만 반영될 내용이 아니라 제작 현장 전반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철학적 기초가 될 것이다. 미디어는 메시지를 통해 수용자들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나 집단 혹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게 작용하며 확산을 유도하는 주요한 전달 도구이다. 따라서 방송영상 콘텐츠

츠 제작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다룰 때 필요한 것은 제작 전문가 집단들의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수용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안내서는 다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향성을 도모하며 제작자들을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기초 내용을 제공한다.

2. 다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시 단계별 가이드라인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제작할 때 그 대상은 대부분이 이주민이나 소수자를 주인공으로 다룬다. 이러한 방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성을 갖게 되기 쉽다. 이주민을 등장시키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개인들을 이해하는 방식이면서 소수자를 조명하는 작업이므로 좋은 의도가 때로는 고정관념을 만들고, 차별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작자들이 다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때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편견 이미지 등을 생산하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문화적 수용성과 인권적 민감성이 요구된다.

1) 제작 준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1) 출연자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다양성이 확보된 구성으로 기획한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적 배경,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주민의 출연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제작의 기초철학이 요구된다. 이주 당사자에게 문화적으로 다른 한국에서의 경험을 묻되, 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와 비교되는 점이나 이주민의 문화를 선주민들에게 알리는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구성을 염두에 둔다(p.36 <이웃집 찰스>의 장면 분석 참조).

(2) 출연자 출신국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과 종교에 대한 고려

출연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 출신국가에 대한 기본상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국가의 위치, 기후, 인구적 특성,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문화상대성에 의한 특이한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적인 관습 등을 배경으로 한 이주자를 다룰 때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p.47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장면 분석 참조).

(3) 출연자의 환경에 대한 맥락적 파악

이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및 공간 하는 일 등 전반적인 환경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여 주변 구성원들과의 관계와 일상의 의미를 찾아낸다. 또한 이주자의 이주 역사를 파악한다. 본국을 떠난 시점, 이유, 본국에서의 지위 등은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로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설득하여서는 안 된다(p.39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 리>장면 분석 참조).

(4) 출연자 선발/ 섭외 시의 고려사항

출연자 섭외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목적, 섭외 이유와 요구하는 역할 및 소요시간, 사례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피드백을 통해 정확히 숙지되었는지 확인한다.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주제와 잘 맞는 인물인지 점검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출연 대상의 사전 인터뷰를 실시할 때 과거 국가에서의 지위나 이력이 방송에서 주요 내용이 될 경우에는 이주자의 과거 행적들을 증빙할 자료 등을 확인한다. 이미 타 방송에서 출연하여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주자들의 자기 서사는 과거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작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1) 출연 시의 배려

출연자가 시나리오를 사전에 숙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촬영 등 제작시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한다. 출연자가 어린이, 장애인 일 경우에는 이들의 출연과 대기실에서 최대한 편안한 공간과 신체에 잘 맞는 의자 등을 배치하며 안전을 기한다. 사회자와의 대화나 패널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이주민에게 정중한 태도와 존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함께 신체적 특징, 피부색, 의상, 종교 등을 희화화 하지 않도록 고정 출연자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이주민들의 한국말이 서툴 경우에는 통번역자가 함께 출연하거나 옆에서 보조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되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2) 출연자에 대한 질문과 평가

쉬운 한국어로 출연자가 이해하기 쉽게 대화한다. 한국 사람으로 동화시키려는 방송에서의 관습적 평가와 덕담을 자제한다. 예컨대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느냐?”, “된장찌개를 끓인다니 한국사람 다했네”, “한국말을 빨리 배워야 한다”

와 같은 말을 이주민에 대한 덕담이나 관습처럼 사용한다. 그러한 질문이나 평가보다는 그 나라와 우리네의 ○○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같은 점은 무엇인가?, 한국인 가족들이 출연자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가?, 그곳의 음식을 잘 먹는가?, 이 외에도 이주민 나라의 언어로 소통 가능성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다문화 수용성을 실천하는 것을 조명한다. 친정국가를 찾아가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찾아가 집안을 촬영할 때도 가난하고 지저분한 집안 살림을 조명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출연자와 이주민의 자아존중감을 확보하는 윤리의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흔하게 활용되는 제작 틀은 이들을 차별받는 불쌍한 사람,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예컨대, 이들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억압받고 우는 장면을 강조하거나, 부당한 대우에도 저항하지 않는 ‘착한 이주민의 상(像)’을 종종 담아왔다. 혹은 언론에서는 그 반대로 조선족이나 탈북인 같은 특정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종종 잠재적 범죄자로 그리기도 한다. 이렇게 소수 이주 집단을 그리는데 있어 차별받거나 잠재적 범죄자라는 메시지로 귀결되는 재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주제에서 차별을 다루어야 할 때는 차별과 배제의 경험만을 조명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차별 속에서 살아오면서 노력하고 변화한 의미 있는 지점과 자아존중감을 조명하려는 제작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4) 현실을 반영하는 묘사

결혼이주자들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가난한 가정 사정으로 한국으로의 국제 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배경의 결혼이주자들의 현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결혼이주자들 모두를 시혜의 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또한 탈북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주된 이야기는 출연자들의 탈북이유와 북한에서의 삶, 대한민국으로 유입 후의 삶을 다룬다. 탈북인 프로그램은 한국 사람들이 갈수 없는 북한사회를 다룸으로써 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북한사회와 북한사람, 탈북인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면 전반적으로 북한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1990년대 중후반 시기를 주로 조명함으로써 현대 북한사회의 객관적 이해를 어렵게 하고 북한사람을 시혜의 대상 혹은 수동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게 된다(p.32 <다문화 고부 열전>, p.45 <모란봉 클럽> 장면 분석 참조).

3) 후반 작업에서 고려할 사항

(1) 이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편집

수용자들이 콘텐츠를 이해하기 적절하게 편집과정을 거치되 이주민 출연자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을 최대한 확보한다. 부정확한 언어는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도록 한다. 자국의 언어로 인터뷰를 한 경우에는 통번역자에게 후반작업에서 텍스트가 제대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내레이션(narration)을 활용할 경우에도 시혜와 타자화의 관점은 지양하며 이주민을 평등한 관점으로 조망하도록 한다(p.36 <다문화 고부열전> 내레이션으로 인한 시청자 게시판 항의 글 참조).

(2) 정보 보호를 위한 편집 작업

출연자들의 집주소, 전화번호와 직장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출연자의 경우에는 북한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묻고 편집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나 살던 곳 등 신변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편집하여야 한다<p.43 <이제 만나러 갑니다> 출연자가 출신 지역 및 가족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면서 진행되는 형식, p.46 <모란봉 클럽> 인신매매 등의 개인적 상황 노출에 대한 고민>.

(3) 모니터와 피드백을 통한 출연자 인권 보호

제작 단계에서 특히 후반작업을 통해 질적인 향상과 완성도는 높아진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이주민을 재현하였는가를 확인하고 피드백 사항을 반영한다. 다문화 전문가로부터 이주민의 재현에서 인권침해요소가 있는지, 차별적인 언어가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여 문제 요소가 있을 경우 올바른 해법을 반영하도록 한다.

2장. 콘텐츠 제작에 유용한 다문화의 이해

1. 한국의 다문화 현황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80,071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10년간 외국인 입국자 수는 매년 평균 10.5%씩 증가하여 10

년 전(91만 명·전체 인구의 1.9%)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 체류 외국인인 중국 48.4%(1,007,553명), 베트남 7.9%(164,495명), 미국 7.1%(147,873명), 태국 5.4%(112,162명), 우즈베키스탄 2.9%(61,341명) 순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141,985명, 국민의 배우자는 154,765명이며, 외국국적동포 중 거소신고자는 402,680명이며 이중 단기체류자는 513,570명이다.

[그림 2] 2017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출처: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2) 결혼이민자 현황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는 154,76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출신 국가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난다. 단일민족의 경향이 짙던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민자들은 1990년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및 한족 여성들이 입국하며 증가했다. 당시 다수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벌인 ‘농촌총각장가보내기’가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들을 증가시키는 계기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배우자들의 국가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을 총칭하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한국인들과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추진체계를 이루어 통합을 위한 과정으로 발전시켜왔다. 다문화정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에 둔다. 베트남과 중앙아시아 권역의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동

반 입국하는 가족들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표 1] 결혼이민자 배우의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6년9월	'17년9월
인 원	148,498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2,543	154,765
전 년 대 비 증 감 륜	2.6%	1.6%	0.1%	0.2%	0.5%	-	1.5%

[표 2]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국적별	계	중 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 타
인 원	1,163,821	527,090	148,417	45,652	45,361	45,185	37,237	314,879
비 율	100%	45.3%	12.8%	3.9%	3.9%	3.9%	3.2%	27.1%

출처: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3) 이주노동자 현황

한국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572,653명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현황에서는 베트남(48,537명), 캄보디아(38,900명), 인도네시아(34,824명), 우즈베키스탄(33,222명), 네팔(31,6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아시아권의 인력이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부분인 52만 3천여 명은 단순기능 인력에 배치되어있고, 전문 인력은 4만8천 여 명이다. 단순기능에서는 비전문취업(277,787명)이 가장 많고 방문취업자(119,799명), 선원취업자(16,152명) 순이다. 전문 인력에서는 특정 활동(21,481명)과 회화지도(14,724명), 예술 흥행(3,919명), 연구(3,270명) 교수(2,507명)등의 순을 나타낸다. 소위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006년 21만 2천 여 명에서 십년 지난 2017년 239,595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계	중 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필리핀
	224,981	48,537	38,900	34,824	33,222	31,625	28,817
572,653	타 이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미국	몽 골	파키스탄
	25,754	24,230	21,294	10,338	10,319	6,801	3,877
	캐나다	키르기	영 국	티모르	일 본	러시아	기타

	스스탄		민주공화국			
2,646	2,425	2,246	1,797	1,202	593	18,225

출처: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들이 회피하는 3D업종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 제도가 임금체불이나 감금노동, 여권 압수 등 많은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고용허가제도’로 바꾸었다. 여전히 생산직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동반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가족초청이 금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문제를 지적해왔다. 예컨대 과도한 노동시간, 열악한 근로환경, 직장 내 폭력, 임금체불, 강제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 등이다.

[표 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전문 인력	단순기능인력
총 체류자	572,653	48,915	523,738

출처: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4) 북한이탈주민 현황

초기 입국한 탈북인은 주로 군인이나 정치적 배경을 가진 탈북인들로서 귀순용사, 혹은 귀순자로 호명되었다. 북한주민들이 한국으로 대거 입국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사회에 경제난과 식량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고난의 행군’에 의한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지급해오던 국가배급을 전면 중단했고, 그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기아를 경험했다. 북한주민들 중에는 중국의 접경지역으로 국경을 건너다니며 먹거리를 구하거나 인신매매에 의해 중국의 농촌으로 팔려가는 현상도 증가했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권금상, 2015).

2015년 실시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한국으로의 탈북인 수용에 관한 의견에서 2007년 전면 수용 52.0%에서 2015년 41.1%로 감소했다. 한국사회 구성원들 전반적으로 탈북인에 대한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가족이나 결혼상대로 갈수록 거리감이 커졌다(박명규 외, 2016). 국내 거주 탈북인들이 적응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북한사람과 탈북인

을 시혜의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희화화 혹은 범죄자등 부정적 대상으로 이
미지화하는 일부 영상 콘텐츠의 제작 관행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토로한다.

2017년까지 한국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71%(21,914명)를 나
타내는데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말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
후 전 세계에 나타난 이주의 여성화와 국내의 국제결혼에서 여성 다수 유입
현상과 맞물린다. 남북문제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5] 2017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98	'01	'02	'03	'04	'05	'10	'17.6(잠정)	합계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91	86	8,891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811	507	21,914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402	593	30,805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80%	71%

출처: 통일부, 2017 북한이탈주민 통계

2. 다문화 관련 용어와 의미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계기로 문화다양성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확산되었다.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지역의 언어, 관습, 종교, 취향, 정체성 등에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삼는다. 2005년에 제정된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
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
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
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
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2011년 UN 총회에서 문화다양성이 전 세계의 사회국가 발전의 동인으로 부
상하여 다양한 예술적 표현, 지역문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인류의 본질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하고 2010년 국회에서 비준되어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했다. 문체부는 법률에 근거해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다양한 문화표현 기회 확대 △문화 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한국 국적자와의 결혼으로 인해 국내에 결혼이민자(F-6)혹은 영주(F-5)의 자격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소지가 있거나 혼인 후 3년 이상,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를 통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이주 노동자

한국 산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이주한 외국인노동자를 말하며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이주민근로자등으로도 호명된다. 국제사회는 차별적 호명인 '외국인노동자'라는 표현 대신 이주노동자로 호칭할 것을 권한다. 국제연합UN)에서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주노동자 협약)은 노동자를 국적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 제2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법률상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자(E-9, E-10, H-2)를 주로 지칭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은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을 통상 3년, 특례 2년 포함, 도합 한국에서의 체류를 5년 이하로 제한한다. 미등록이주근로자는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들어왔으나 체류 허가 기간을 넘기거나 위반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한국사회에서는 일명 불법체류자로도 통칭되는데 이는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호명이다.

- 외국인고용 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고용허가 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 허가하는 특례고용 허가제로 구분됨
-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15년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임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한국고용정보원, 2017 고용허가제 동향)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탈북민, 탈북인, 새터민, 탈북자, 북한이주민 등 여러 용어로 호명된다. 이들에 대한 공식 호칭인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하 북한이탈주민법).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분단으로 고통 받는 분단 이재민으로 규정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와 지원정책을 펴왔다. 지원정책의 근거는 1997년 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실시되어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시하는 명시적 목표는 탈북인들로 하여금 자립 자활을 이루어 한국사회에서 정착을 도모한다.

5) 재외동포

해외에 거주하는 약 750만 동포를 지칭하는 용어로 교포, 교민, 해외교포, 해외동포, 재외동포 등으로 불린다. 재외동포 관련 법률은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일부개정, 1011.4.5. 법률10543호)제2조에서 재외동포를 규정한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재외국민)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한다(제2조). 적용범위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얻은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한정하였고(제3조),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한다(제4조). 외국국적동포는 상한을 2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제3조, 제10조 ①, ②. 2008.12.19. 체류기간 3년 상한으로 변경)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한다(제5조 ②, 2005.12.29.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도 체류자격 부여 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재외동포는 혈통위주의 민족이 아닌 재외국민의 개념이다. 그에 반해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정의)에서의 재외동포에 관한 규정은 혈통을 공유하는 민족의 개념이다.

6) 난민

한국은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67년 의정서에도 가입했다. 1970년대 들어 베트남을 탈출한 난민들이 한국에 상륙하자, 유엔난민기구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이들의 제3국 정착을 지원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한국대표부로 승격되어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13년에는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난민법을 제정, 시행했다.

한국에서 난민에 관한 규정과 지원은 난민법에 의해 실시된다. 제1조 (목적)는 관련 판례로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 법률 제14408호 일부개정 2016. 12. 20)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난민법은 6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2조에서

는 난민을 정의하고 규정한다.

제2조1호.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2조2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제2조3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제2조4호.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장. 방송제작의 다문화 관련 가이드라인과 심의

서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며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방송제작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에서 표현할 때 지켜야할 안내서를 마련해왔다.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방송 콘텐츠 제작물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은 다문화를 둘러싼 이슈에서 수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따라서 미디어는 다원주의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다원주의란 미디어의 다양성과 미디어 내부에서의 목소리, 의견과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텔레비전의 다양성은 방송프로그램을 하나의 상품이 아닌 문화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산물이다(이영주, 2006). 미디어의 문화다양성은 프로그램과 사회를 공유하며 정의하는 가치가 되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여 이주민이 늘어가는 현실과 분단체제에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공생의 가치를 가늠

하게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묘사하는데 있어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중립적이며 사실을 기반으로 재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 해외의 방송 가이드라인

1) 영국

영국은 문화다양성을 한 시대와 한 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적 가치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문화적 자산이자 사회적 산물로 본다. 영국정부와 방송규제기구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은 콘텐츠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며 프로그램 공적 가치의 구현을 한다. 다양성의 가치는 방송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구현된다. 공영방송인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는 제작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을 통해 모든 사회계층에 봉사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민의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반영 표현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소수집단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 고정관념)을 피하면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묘사하는 위험에 주의해야 함을 전제한다.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하게 묘사된다고 느끼는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을 지적하며 다문화 주체들과 관련한 묘사를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이 제안해왔다.

● 묘사 영역(BBC 가이드라인, 1996)

- 불충분한 표현: 프로그램의 전체 장르에서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표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참가자를 선택해야 하며, 능력 있고 건강함 백인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해롭거나 부정확한 고정관념: BBC프로그램이 흑인을 범죄자로, 여성을 주부로, 장애자를 희생자로 동성연애자를 사회의 낙오자로, 노인을 무능력자로, 어떤 특정직업종사자를 우스개로 범주화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현실을 반영하는 모든 범위의 역할을 하도록 다루어야 한다.
- 여성: 非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여성의 속성이라는 인상을 고착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다(예: busmen, policemen, newsmen 등은 bus-drivers, police officers, journalist 등으로 대체돼야 한다).
- 소수민족: 사람들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구분 지으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부색은 정말 필요할 때에만 언급돼야 한다.
- 용어:

· 소수민족의 개념이 한상 흑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칭은 아니다. 백인도 소수민족일수 있다.

· 피부색보다는 인종적 또는 지리적 민족개념이 더 합당할 수 있다.

· 흑인에 아시아인을 포함시켜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非)흑인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비백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좋은 방법을 우리가 그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할지 물어보는 것이다.

- 잘못된 이미지

흑인과 아시아계 사람들은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이 공격적인 말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는 인터뷰대상자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 장애인: 이는 사람을 문제 집단으로 정의한다. 대체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을 선호한다. 특정 부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그들이 그렇게 불려 지기를 원하면 존중한다. 장애인도 장애사실과 상관없이 오락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장애인과 인터뷰를 할 때 그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안전과 관련한 장비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 종교집단: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나 국가가 단지 종교에 의해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특정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이거나 이상한 것으로 묘사된다면 이는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이슬람행동주의자들의 환호하는 장면을 전체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양 이용해서도 안 된다.

- 성적인 문제: BBC 프로그램이 편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동성연애자는 분별없고 공격적인 고정관념에 얽매일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자는 동성연애자들이 이성연애자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사회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노인: 그들을 주변적이고 의존적이고 취약하고 수동적인 삶을 다루는 이미지는 은퇴하고 가족부양의 책임을 벗은 사람들이 때로는 바쁘고 활동적이며 가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다. BBC는 청중이나 출연자 등 어떤 형태로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린이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어린이가 수업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면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법적 소송과 관련할 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6세 이하 어린이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

· 성폭행의 희생자로 어린이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

2) 캐나다

캐나다 방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로 구성된 국가를 통합시키기 위해 다양성을 반영하며 발전시켜왔다. 캐나다 방송은 1950년대부터 지상파 텔레비전을 수신했는데 60% 이상이 미국 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미국인의 관점에서 제작되었다(이영주, 2006). 캐나다 정부는 1991년 방송법을 개정 할 때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 방송법은 캐나다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여성, 어린이들의 삶과 생각, 필요와 관심들을 반영해야 하고 언어의 이원성(영어와 프랑스어)과 다문화, 다인종적 특성을 차별 없이 반영해야 함을 규정한다. 또한 원주민들의 특별한 지위와 삶도 반영한다. 캐나다 연방 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인 라디오 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는 방송과 전기 통신을 규제하고 감독하며 방송의 다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04년 7월 캐나다방송협회는 텔레비전문화다양성위원회(Task Force for Cultural Diversity on Television)를 구성하여 캐나다인 반영하기를 주안점으로 하는 텔레비전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최선의 전략(Reflecting Canadians : Best Practices for Cultural Diversity in Private Television)보고서(이하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수용하였다. 핵심 권고 사항은 캐나다 방송협회의 규정 이민족 문화 단체나 원주민 단체의 반영 및 묘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연구보고서 결과에 지적된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캐나다방송협회는 2005년 9월 TV프로그램의 장애인 현실, 묘사, 참여(The Presence, Portrayal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elevision Programming)라는 보고서(이하 '장애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캐나다방송협회는 묘사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위원회 보고서'와 '장애인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지침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보고서', 그 중에서도 특히 4단계 포커스 그룹 연구는 민족 문화 집단과 원주민 집단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묘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확인하였다.

- 스테레오타입화
- 부정적이고 부정확한 묘사
-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불균형한 묘사

캐나다방송협회의 평등 묘사 규정(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 Equitable Portrayal Code,(2008. 3. 17))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묘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CAB의 묘사 규정은 다문화 콘텐츠 제작에 있어 주요한 참고기준이 될 것이다.

◎ 캐나다방송협회의 묘사 규정(CAB Equitable Portrayal Code, 2008)

(1) 평등 묘사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은 모든 개인에 대한 평등 묘사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2) 인권

방송사는 모든 사람이 특정 기본권과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이 인종, 출생지, 민족적 태생, 피부색, 종교, 연령, 성, 성적 취향, 혼인 유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근거하여 모욕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내용 또는 발언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정적 묘사

모든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적절히 묘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는 인종, 출생지, 민족적 태생, 피부색, 종교, 연령, 성, 성적 취향, 혼인 유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와 관련하여 사람을 부당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부정적 묘사는 여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스테레오타입, 낙인 및 희생, 신화나 전통 또는 관행의 조롱, 비하착취가 포함된다(그러나 이것들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4)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화 하는 것은 스테레오타입화 된 대상 집단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단순화하고, 하찮게 여기고, 상처를 주고, 편견을 갖게 하는 일반적 형식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방송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인종, 출생지, 민족적 태생, 피부색, 종교, 연령, 성, 성적 취향, 혼인 유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근거한 부당하게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내용 또는 발언이 담기지 않도록 한다.

(5) 낙인 및 희생

방송사는 특정 구별집단의 구성원들이 묘사와 관련한 특정 이슈에 직면하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인종, 출생지, 민족적 태생, 피부색, 종교, 연령, 성, 성적 취향, 혼인 유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낙인찍거나 희생자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신화, 전통, 관행의 조롱

방송사는 인종, 출생지, 민족적 태생, 피부색, 종교, 연령, 성, 성적 취향, 혼인 유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근거하여 집단의 신화, 전통, 관행을 부당하게 조롱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7) 비하적 소재

방송사는 인종, 출생지, 민족적 태생, 피부색, 종교, 연령, 성, 성적 취향, 혼인 유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근거하여 말, 소리, 이미지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8) 착취

가. 방송사는 여성, 남성 또는 아동을 착취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나. 방송사는 프로그램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

(9) 언어 및 용어

방송사는 인종, 출생지, 민족적 태생, 피부색, 종교, 연령, 성, 성적 취향, 혼인 유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관련된 경멸적 또는 부적절한 언어나 용어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한 언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성 평등은 적절한 언어 및 용어의 사용을 통해 인식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면 한쪽 성에만 국한된 표현을 삼감으로써 성차별적이지 않은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나. 언어나 용어는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몇몇 언어나 용어는 인종, 출생지, 민족적 태생, 피부색, 종교, 연령, 성, 성적 취향, 혼인 유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근거한 구별집단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경우 부적절할 수 있다. 방송사는 지역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을 유념하면서 특정한 말이나 문구의 적절성 또는 부적절성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10) 맥락의 고려

방송사는 다음과 같은 맥락적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에서라면 앞의 조항들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예술적 사용 : 프로그램 전체가 모욕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전제로, 고집불통이며 편협한 개인이 허구적 또는 사실적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나. 코미디, 유머 혹은 풍자적 사용: 프로그램의 코미디, 유머, 풍자적 의도나 속성이 이 규정에서 금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완전한 방어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코미디, 유머, 혹은 풍자적 내용은, 비록 차별적이고 스테레오타입적이라 할지라도, 모욕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이라기보다는 가볍고 비교적 무해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 지적인 취급 : 명백하게 학문적, 예술적, 인도주의적, 저널리즘적, 과학적 또는 연구적 목적, 기타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방송될 수 있다: 모욕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고, 언급된 집단에 대한 경멸이나 심한 조롱을 유발하지 않고, 언급된 집단에 대한 증오를 유발하거나 영구화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국내의 방송 가이드라인 현황

1) 방송심의 규정 현황

국내 방송에 관한 심의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규정하는 기본법령, 심의 규정 및 선거방송심의 및 기타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방송사들 역시 방통위의 심의 관련 규정집에 의거하여 심의를 규정하고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수의 선주민과 소수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한국사회에서 구성원인 결혼이주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소수집단을 다루는 미디어 콘텐츠는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에서 이들에 관한 용어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분단체제를 반영하는 통합을 위한 심의 조항(29조 2항 ②)이 신설되었지만, 국내에 들어온 탈북인들을 담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시, 차별적인 요소에 대한 지침이 없어 영국, 캐나다와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 내용의 소수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의 심의 규정집 안에서 범주별로 제시한 조항 속에 다문화, 문화다양성 혹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관련한 심의 규정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법령(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총칙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 ⑥ 방송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 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⑩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일반기준

제9조(공정성)

-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인권보호)

- ②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9.>

윤리적 수준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 간, 세대간, 계층 간, 인 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 ①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절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1.9]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9>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9>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수자 차별 금지와 다문화 수용성

국내외의 방송 가이드라인과 심의규정을 종합하면 미디어가 재생산해온 다양한 차별의 행태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규정하는 것부터 차별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 까지 광범위하고 두텁게 수행되었다. 그 대상은 해외는 주로 장애인, 유색인종, 원주민,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성적 소수자 등이었으며 국내에서는 결혼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성적 소수자 등 차별적 요소가 다양한 층위로 나타나고 있다.

차별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와 달리 은밀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방송제작자는 각별히 유의해서 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 민감성을 키우고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콘텐츠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편견을 조장하는 이중적 제작 관행을 보여 왔다. 그러한 경향은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통일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일부 미디어 콘텐츠는 분단체제 속에서 북한사회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내용과 북한이탈주민을 시혜의 대상으

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별적 프레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에서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주류 구성원들로 하여금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이해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어 통일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게 한다. 방송의 기능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이며 차별은 이를 저해하는 핵심 기제라는 점에서 국내외 방송의 가이드라인은 차별적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좋은 프로그램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작자의 실수와 오류를 최소화하는 밑바탕이 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황우섭, 2014) 따라서 방송제작자는 여러 층위의 소수집단을 편견과 차별로 타자화시키거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정형화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방송제작자들에게는 문화다양성협약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이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다문화 수용성 함양이 요구된다.

4장. 다문화 콘텐츠의 미디어 재현 현황과 모니터링 분석 사례

1.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 현황

국내 텔레비전에서 본격적으로 다문화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시기는 2005년 이후이다.¹⁾ 2005년 11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러브인 아시아>(KBS1)는 2015년 2월에 마지막 방송을 할 때까지 10년간 총 453부작을 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방송을 시작한 <미녀들의 수다>(KBS2) 역시 시즌2를 진행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다큐 미니시리즈 <인간극장>에서도 많은 이주민 관련 아이템을 다루면서 텔레비전을 통해 이주민의 모습이 대중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이주민의 모습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 중 TV 매체를 통해 연구된 장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TV드라마 부분에 대한 연구 중,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한국의 지상파 3사 드라마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유형화해 한국 드라마의 민족적 정경을 살펴본 개괄적 연구(주혜연·노광

1) 2005년 이전 방송 프로그램 중 시사/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은 2000년 <박수홍·윤정수의 아시아! 아시아-느낌표>(MBC), <희망릴레이-우리는 한가족>(KBS), <일요일이 좋다-사돈 처음뵈겠습니다>(SBS) 등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프로그램들은 다문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하나의 큰 프로그램 안에 일부 코너로 삽입되었다.

우 2013)를 통해서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비중이 매우 적다(6.4%)는 것과 극중 역할 자체가 조연이나 단역에 머문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극 중 역할을 유형화한 결과 동경집단에는 미국·유럽 출신의 백인과 백인혼혈인이 속했는데, 대다수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들로 호감을 주는 외모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 반면 동정집단은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유색인종과 흑인혼혈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고 사회 하류층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국 드라마에서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당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TV드라마의 재현 방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하노이 신부>(SBS, 2005)와 <깜근이 엄마>(SBS, 2006)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결혼을 둘러싼 현실적 난제들을 ‘낭만적 사랑’과 ‘가족 만들기’의 서사를 통해 가족 내부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류찬열, 2009). 문제는 이런 지적들이 드라마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현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반복된다는 점이다.

KBS <인간극장>은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서사 분석을 통한 담론 분석을 시도한 연구(심훈, 2012)에서는 <인간극장>이 가부장 다문화주의와 가부장적 동화주의, 가부장적 낭만주의와 동정적 동화주의, 그리고 주변화/타자화 등 다섯 가지의 분절적인 다문화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외에도 결혼 이주민들의 언술 행위에 관습적인 기준과 특정한 규범을 제시하며 자국 문화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소개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와 함께 영미권 출신의 가부장이 소개하는 다문화적 발화만 허용하는 조건부적 가부장주의 다문화 담론을 구축하는 것(심훈, 2013), 다인종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혼혈자녀의 정체성 및 사회적 지위, 배우자의 국적 취득, 인종에 따른 크고 작은 편견과 이로 인한 사회적 경계의 형성-에 대해 순혈주의적 대가족 공동체로서 가정을 치유와 화합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홍지아·김훈순, 2010)도 있다.

<러브인 아시아>(KBS1)와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이 이주여성이라는 소수자집단 재현을 통해 주류구성원들과 이주민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가족의 가치’라는 동질성을 통해 ‘새로운 혈육 이데올로기’로 정서적 통합을 구축하는 결과를 지적했다(권금상, 2013). 탈북여

성들은 여성성을 소구하는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주류로부터 승인을 거치는 호명과 타자화의 재현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시혜 대상이자 타자화된 집단으로 조명한다는 점, 차별화된 에피소드 내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해결구조가 강조되는 점도 최근 제작되는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유형이다.

이들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방송을 시작한 <비정상회담>(JTBC, 2014)은 앞서 분석대상이 된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달리 사회 구성원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비정상회담>의 출연진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인종, 종교, 민족, 국적, 성, 계층 등의 다문화 요소에 대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하며 수용하려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이 타인의 다양성에 한 편견을 극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어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선옥·이운정, 2015).

<이웃집 찰스>(KBS2)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과거에 비해 이주민 재현 대상자가 다양해지고 이들의 활동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점, 사회적 차이와 편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었다는 점 등은 이주민의 재현을 긍정적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젠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 가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전통적인 가족주의 담론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았다(박미경, 이현율, 2017).

마지막으로 광고 분야에서는 공익성 다문화 광고에 담긴 이주민들의 의미화와 재현 과정을 살펴본 연구(마정미, 2010)를 통해 이주한 아시아 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해 동화를 강요하는 일련의 스테레오 타입을 발견했다. TV 광고에서 재현되는 인종에 대한 연구(문영숙, 2014)에서도 광고 속에 등장하는 동양인이나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 열등하게 묘사됨에 따라 다문화 주의를 표방한 광고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아직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음은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긍정적 유형과 부정적 유형을 대별함으로써 재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다문화 관련 방송 영상 모니터링 분석 사례

1) TV드라마 프로그램

현재 방송중인 TV드라마 중에서 이주민의등장이 두드러지는 방송은 없다. 기존에도 이주민의 출연은 작품 내에서 보조적 지위에 머무르긴 했지만 드라마 장르에서 이주민의 등장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다문화를 주요 의제로 다룬 단막극 형태의 드라마의 출현이 두드러졌다. 두 편의 단막극을 통해 다문화를 소재로 제작된 드라마의 재현 방식을 살펴본다.

(1) KBS 드라마스페셜 <그 형제의 여름> (방송일시 : 2015.08.28.)

① 전체 내용 :

1992년 부산에 살고 있던 동길은 자신과 피가 섞이지 않은 아버지 최국진 씨와 그의 아들 영길과 함께 산다. 영길과 자신을 차별하는 최국진 씨에게 서운해 하며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 영길이 흑인 혼혈아라는 이유로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한다. 이들과 가족이 되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우상인 서태지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갈 계획을 세우던 동길은 최국진 씨의 재혼 위기 앞에서 자신과 영길이 엄마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자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간 영길을 살려달라며 대성통곡한다.

② 긍정적 유형의 재현 : 인종 차별 상황을 드러내는 장치로서의 재현

<그 형제의 여름>에서 차별의 대상인 영길은 흑인계 혼혈로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이다. 영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블랙조’라고 놀림을 받고 ‘미국사람’이 한국말을 한다며 밀침을 당한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자신이 따르는 형 동길로부터 한국 사람처럼 하얘지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때 재현되는 다양한 모습들은 의도적 비하를 목적으로 하는 재현이 아닌 혼혈 아동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가시화시키기 위한 장치로서의 재현이다.

<그 형제의 여름>이 보여주는 긍정적 지점은 오히려 차별 안에서 보여지는 ‘정상성’이다. 바닷가에서 영길이 자신을 놀리던 여자 아이들을 밀치자 이들의 엄마가 등장하면서 영길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부모님 어디 계셔? 응? 어디 계셔?” 기존의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부모에게 비하적 발언을 하기 마련이지만 <그 형제의 여름>에서는 이 상황을 한국 부모가 보일 수 있는 정상적 상황으로 그렸다.

또한 마지막에 유일한 가족 참가팀으로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했을 사회자 역시 “외국인도 있어요. Can you speak Korean?”이라고 묻지만 자신의 동생 영길이는 한국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길의 답변에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바로 사과한다.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기존의 재현 방식과는 다른 긍정적 방식의 보여주기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세한 재현 방식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였던 <그 형제의 여름>은 전체적인 주제 면에서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까지 남으로 알았던 영길이 자신과 같은 어머니를 가진 혈육임을 알게 된 동길의 태도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럽다. 영길이 자신과 같은 혈육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말이 가능할까라고 바뀌서 생각하면 기존에 지적된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육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로 귀결된 결말이 아쉽다.

[그림 3] <그 형제의 여름> 장면 분석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 한국 사람처럼 하얗게 되라는 형의 말을 듣고 자신의 손등을 지우개로 지우는 영길.</p>	<p>장면설명 : 화장품을 바르면 하얗게 된다는 말에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동길을 찾아가기도 한다.</p>
장면 3	장면 4
	
<p>장면설명 :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한다며 놀림 당한 영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이들은 영길을 밀어버린다.</p>	<p>장면설명 : 댄스경연대회에 온 가족이 참석하며 영길이를 자신의 동생으로 소개하는 동길.</p>

(2) KBS 드라마스페셜 <비밀> (방송일시 : 2015.11.14.)

① 전체 내용 :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띠엔. 경찰은 띠엔이 범인이라고 단정한 채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에 들어간다. 베트남에서 결혼이주를 했던 띠엔에 대한 주위 평판은 헌신적이고 가정에 충실하며 남편 밖에 모르는 순종적인 여성인 반면 남편은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띠엔은 글을 몰랐던 남편이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출 사기를 당하고 돈을 되찾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② 부정적 유형의 재현 1 :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폭력

띠엔은 한국어교사를 할 정도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났지만 글을 몰랐던 남편으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쌓인다. 그러나 극 중에서 이러한 오해와 갈등은 시종일관 폭력으로 드러난다. 폭력은 현실에서도 가장 손쉬운 문제 해결책이다.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 역시 큰 고민 없이 오해와 갈등을 드러낸 재현 방식일 뿐이다. 가정폭력이 보편적인 결혼이민자 가정만의 현상도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짙은 폭력 장면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림 4] <비밀> 장면 분석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설명 : 파스를 사러 나간 띠엔이 도망갈까 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남편	장면설명 : 띠엔이 글을 읽어달라고 하자 술병을 집어 던지는 남편	장면설명 : 오해로 인해 한국어 수업 중인 띠엔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③ 부정적 유형의 재현 2 : 결혼이주여성의 일방적인 희생 강조

<비밀>에서 띠엔은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이 없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애정을 표현을 한다. 비오는 날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 오빠 오늘 폭 쉬겠네’라고 말하는 부분은 띠엔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인 띠엔은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도 늘 남편을 위해 행동하고 생각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비밀>은 초반에 형사 입장에서 의 관찰자 시점으로 시작하다가 중반부에 띠엔의 시점으로 바뀐다. 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으로 사건을 바라보다가 띠엔과 남편에게로 감정이 이입되는 드라마의 장치로써 효과적인 시점 전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 전환은 시청자와 띠엔을 동일한 입장에 서게 한다. 그렇게 되면 남편의 폭력이 정당화되고 띠엔은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된다. 띠엔은 자신을 선택해준 남편에게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이런 띠엔이 혹시 자신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남편은 오해가 생긴 상황에서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비밀>에서 보여지는 문제는 기존에 결혼이민자가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부분들이다. 갈등구조가 발생하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인내와 희생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리므로써 갈등이 해결구도를 맞는다는 점이 그렇고, 갈등의 주체인 남편은 결혼이민자를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아름답고 가련한 온정의 대상’이거나 ‘착한 아내이자 며느리’, 또는 ‘팔려온 여자’라는 스테레오 타입의 정형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띠엔 역시 대중에게 다층적인 모습을 상상할 여지를 차단한다는 점(조진희, 2012)에서 아직은 드라마 속 결혼이민자의 재현의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비밀>의 장면 분석 2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설명 : 공사장에서 불이 난 뒤 남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자 직접 불길로 뛰어든 띠엔.	장면설명 : 자신의 신분증을 숨긴 남편에게 산모수첩을 건네며 등록증은 오빠가 주고 싶을 때 달라고 함.	장면설명 :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오열하는 띠엔.

2) TV시사/교양 프로그램

(1) EBS <다문화 고부열전> (방송정보 : 2013.10.18. ~ 방송중)

① 프로그램 구성 :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 며느리와 결혼이주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한

시어머니의 갈등과 해결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이들을 보여주기 위해 프로그램 앞부분에서는 일상생활 안에서 부딪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여주며 후반부에는 며느리의 고향인 국가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들의 여행이 며느리에게는 오랜만의 친정 나들이 기회가 되는 한편 시어머니에게는 낯선 문화권의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며느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② 긍정적 유형의 재현 : 낯선 문화권에 놓인 상대의 상황을 통한 공감

장면 1, 2는 ‘자기 말이 법인 시어머니, 아이 같은 며느리(2016.09.08.)’에서 방송된 화면이다. 즐겁게 시어머니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던 며느리와 베트남을 함께 방문한 시어머니는 철없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여겼던 며느리가 어린 나이에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생했겠다는 공감의 표현을 한다. 이런 표현을 들은 며느리는 자신이 이해받았다는 기쁨을 인터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말로만 듣던 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써 상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송 제작 의도와 부합하는 장면이다.

장면 3, 4는 ‘내 며느리는 케냐에서 온 명문가 출신(2016.12.08.)’의 한부분이다. 며느리와 소통하기 위해 며느리가 사용하는 영어를 배우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와 케냐에 간 며느리는 늘 집안일을 하느라 쉬지 못한 시어머니가 여행을 즐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좋아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워서 소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지만 소통을 위한 선주민으로서의 시어머니의 노력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6] <다문화 고부열전>장면 분석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이해받았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 며느리.</p>	<p>장면설명 : 학교도 안 가고 일을 해왔다는 며느리의 과거를 듣고 공감하는 시어머니.</p>
장면 3	장면 4



② 부정적 유형의 재현 : 편견으로 인한 갈등

장면 1과 2는 ‘자기 딸이 법인 시어머니, 아이 같은 며느리(2016.09.08.)’의 방송 내용이다. 며느리는 남편이 좋아하는 머리 모양을 고집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옛날 어른들’이 안 좋다고 했기 때문에 못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며느리가 식사 때가 되어도 음식을 하지 않고 배울 생각도 없다는 시어머니지만 결국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향신료 냄새로 못 먹는다면서 전혀 먹지 않는다.

장면 3은 ‘내 며느리는 케냐에서 온 명문가 출신(2016.12.08.)’에 출연한 시어머니가 억지로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 넣는 장면이다. 케냐 출신의 미국 유학파인 며느리가 서양 음식을 주로 해먹기 때문에 아이가 한식을 기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밥을 먹이고 아이는 도망 다닌다.

장면 4는 ‘집 달라는 며느리, 줄 수 없다는 시어머니(2017.07.13.)’의 갈등을 다뤘다. 결혼 초기에 건물을 주겠다고 시어머니가 돌연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건물을 팔아버린 데다가 별도로 재산을 챙겨주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쫓겨날 거라고 생각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우려를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투사하며 재산 외에도 며느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의심의 눈초리로 살핀다.

[그림 7] <다문화 고부열전> 장면 분석2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며느리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무조건 며느리의 행동을 나무라는 시어머니.</p>	<p>장면설명 :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가 특유의 조미료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시어머니.</p>
장면 3	장면 4
	
<p>장면설명 : 서양 음식을 해먹는 며느리로 인해 아이가 한국 음식을 싫어할까봐 억지로 먹이는 시어머니.</p>	<p>장면설명 : 며느리가 언젠가는 재산을 정리해서 친정으로 갈 거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p>

<다문화 고부열전>의 프로그램 기획 의도는 사이가 좋지 않은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고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대역 재현이 아닌 현재 갈등 상황 그대로를 노출시키는 방식의 촬영이 이뤄진다. 그러나 실제 갈등 사례를 재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의심스러운 상황들로 시청자로부터 지탄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고부열전>의 내레이션은 결혼이주여성의 입장보다 시어머니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한다. 대표적으로 ‘며느리의 결혼조건 때문에 괴로운 시어머니편(2017.11.16.)’에서는 결혼조건을 지키지 않는 시댁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레이션으로 큰 공분을 샀다(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해당 방송분만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프로그램 형식 자체는 중간 인터뷰를 통해 양쪽 입장을 조율하는 듯 보이지만 내레이션이 시어머니, 즉 선주민 입장에서 낭독

된다면 결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타문화권 출신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의 시야보다 선주민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다문화 고부열전>에서 보이는 ㅠ우려스러운 점은 출연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결코 여행서사를 통한 이해와 공감이라 아니라는 점이다. 방송회차별 제목만 봐도 ‘집 나갔다 돌아온 며느리와 마음 담은 시어머니(2017.11.02.)’, ‘친정만 챙기는 며느리, 헛돈 쓰지 말라는 시어머니(2017.09.14.)’, ‘아들이 살림하는 게 싫은 시어머니, 은근히 즐기는 며느리(2017.08.31.)’, ‘며느리와 살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의 속사정(2017.06.01.)’, ‘30년 남처럼 산 모자(母子), 눈치보는 며느리(2017.01.26.)’ 등등 대부분 고부의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고부열전>은 이들이 처한 문제와 갈등이 여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개인들의 문제로 보이게 한다. 이들의 삶의 재현 형식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특성상 수용자들로 하여금 ‘사실 그대로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현이 이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제도적 문제들을 은폐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갈등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시킬 위험이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그림 8] <다문화 고부열전> 시청자 게시판
항의 내용

617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되면 메메촌? 우끼고 있네 [6]	👤 박*수	2017.11.22	470
616	베트남 결혼한 사람입니다. 게시판을 보고 의견올립니다. [9]	👤 정*열	2017.11.22	960
615	탄니 시애틀 주소 좀 알려주세요. [1]	👤 이*준	2017.11.22	1083
614	탄니씨 방송보고 항의글올립니다	👤 김*미	2017.11.22	552
613	고부갈등이라니요, 사기 메메촌에 지지 않는 방송 [7]	👤 이*관	2017.11.22	471
612	프로그램 폐지 바랍니다.	👤 이*영	2017.11.22	267
611	재미있게 보는 시청자 [7]	👤 이*수	2017.11.22	968
610	👍 이상하신 분이네	👤 조*영	2017.11.22	228
609	EBS는 사기 국제결혼 장려 방송입니까? [6]	👤 Sta*****	2017.11.22	404
608	그리고 탄니씨 힘내세요 울지말고 ㅠ ㅠ	👤 박*	2017.11.22	246
607	여기 제작진들도 초저야 될 *들이고 저 메미하고 아들*하고 사기결혼으로	👤 Jon*****	2017.11.22	288
606	한국인의 더러운 면 [1]	👤 김*결	2017.11.22	358
605	너무 화가나네요	👤 정*위	2017.11.22	177
604	탄니씨도 자신의 권리 가진 사람입니다	👤 김*지	2017.11.21	204
603	교육방송???????	👤 산*초	2017.11.21	141
602	탄니씨에게 좀 전해주세요.	👤 정*위	2017.11.21	357
601	탄니씨를 베트남으로.	👤 최*희	2017.11.21	285

출처 : EBS <다문화고부열전> 시청자 게시판

(2) KBS <이웃집 찰스> (방송정보 : 2015.01.06. ~ 방송중)

① 프로그램 구성 :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의 리얼 적응 스토리를 담은 신개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표방한다. 프로그램 형식은 이주민의 삶을 밀착 촬영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형식과 ‘이방인 학교’라는 스튜디오 토크로 구성되어 있다. 동대문에 설치된 여행 가방 모양의 ‘이방인 학교’를 스튜디오 세트로 사용하며, 진행자는 학교 선생님이므로, 먼저 정착한 이주민 선배와 신입생이 된 이주민이 함께 토크를 진행한다.

② 긍정적 유형의 재현 : 다양한 계층의 이주민에 대한 소개

장면 1(2017.07.04. 120회)과 2(2016.11.01. 87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난민’ 지위를 받은 이주민을 소개한 방송이다. 다른 출연자들의 경우 자의적 선택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과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심사대기 중인 이주민의 등장은 국제 뉴스에서나 접하던 생소한 이주민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의 난민 지위 신청 계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주 배경을 설명한 점도 공감을 얻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장면 3(2016.10.18. 85회)은 네팔 출신으로 한국 의사가 된 이주민 가족에 대한 내용이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민들이 모두 국내 3D 업종에서 근무할 거라는 편견에 도전하는 한편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가 네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을 걱정한다.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이 직면한 이런 문제는 귀화를 통해 이주민 자신의 한국 신분은 안정된 반면 2세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장면 4(2016.09.20. 81회)는 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 아닌 한국 가정에 입양된 방글라데시 이주민 가족이 등장한다. 중도입국자녀들과 같은 상황을 겪는 이 가족들 역시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주 배경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9] <이웃집 찰스> 장면 분석

장면 1	장면 2
	
<p>장면 설명 :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카메룬 출신의 이주민 출연.</p>	<p>장면 설명 : 인도적 보호 지위의 G1 비자에 대한 소개.</p>
장면 3	장면 4
	
<p>장면 설명 : 네팔 출신의 아빠 소개. 하얗게 되고 싶어 흰 음식만 먹는 딸.</p>	<p>장면 설명 : 입양아로 한국인이 된 이주민 가족 출연.</p>

③ 부정적 유형의 재현 : 고정적인 성역할, 음식을 통한 동화 정도 점검

장면 1과 2는 모두 결혼이민자가 출연한 내용이다. 과거 <러브 인 아시아>와 <다문화 고부열전>에서는 출연자가 여성이었던 반면 <이웃집 찰스>의 결혼이민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출연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살림하는 사적 영역에 머물고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역할로 고정되어 나타난다. 해당 방송분 외에도 ‘바깥일 하는 남자’와 ‘집안일 하는 여자’로 이분화된 가부장적인 선주민의 모습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한국은 원래 그렇다’는 비논리적 근거로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모든 갈등을 덮어버린다.

장면 3(2016.03.08. 56회)과 장면 4(2016.03.29. 59회)의 경우는 한국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 이주민의 모습이다. <이웃집 찰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주민 등장 방송에서는 어떤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에 따라 동화 정도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선주민 중에도 너무 맵고 자극적이거나 물컹한 식감의 음식을 꺼리는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등장하는 방송에서는 하나의 관례처럼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명백히 동화주의에 근거한 인식과 행동이

다.

<이웃집 찰스>는 방송 초기부터 안정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지점들을 확장해 왔다. 이주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비자의 종류에 따라 거주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출신 국가나 인종에 따라 정형화된 이주 배경을 재고하는 여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현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인다.

[그림 10] <이웃집 찰스> 장면 분석 2

장면 1	장면 2
<p>장면 설명 : 취업이 되지 않아서 하기 싫은 집안일을 억지로 하는 남편.</p>	<p>장면 설명 :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온 뒤 시댁 어른들과의 생활에 적응하는 부인.</p>
장면 3	장면 4
<p>장면 설명 : 떡볶이가 매워서 먹지 못하는 엄마와 돼지고기가 먹고 싶은 아들.</p>	<p>장면 설명 : 가족들이 둘러앉아 회를 먹는 시간, 먹자마자 뺄는 출연자.</p>

(3) EBS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 리> (방송정보 : 2015.09.02. ~ 방송중)

① 프로그램 구성 :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둔 한국.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 리>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들을 고국의 가족들이 직접 찾아나서는 여정을 담는다. 한국에서 일하는 아빠를 찾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아이들. 한국에 도착해 아빠를 찾아가는 여정을 따라가며 아이 눈에 비친 한국과 한국인,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담아 성찰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② 긍정적 유형의 재현 : 이주민을 대하는 선주민의 긍정적 재현

장면 1과 2(2015.09.02. 1회)는 아빠를 만나러 오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재현된 지도와 한국에서 길을 묻는 남매에게 나서서 길을 알려주는 선주민의 모습이다. 한국이 처음인 어린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곳은 방향이 같은 선주민은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며(2016.10.25. 11회), 길을 묻는 아이들에게 음료수와 간식을 나눠주며 고향과 아빠에 대해 묻는 모습들은 인종차별적 시선을 부각시켰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담는다.

장면 3(2017.07.04. 43회)은 국내 경제여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담은 장면이다. 조선업에서 4년간 근무했던 출연자는 회사가 문을 닫은 후 3개월 내로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고물상과 컴퓨터 수리점 등을 돌며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나 모두 고용직 종 코드가 맞지 않아 일손이 필요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면 4(2017.07.11. 44회)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작업 현장이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를 소개하면서 선주민들의 기피 업종의 산업 현장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덧붙여지고 함께 일하는 선주민과 타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담게 된다.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산업 현장을 자세하게 조명함으로써 선주민들에게도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할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 리>의 재현 방식을 검토한 결과 눈에 띄는 부정적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의 재현 장면에서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차별 상황은 재현에서 배제되었고 가족들의 고국 생활 모습에서도 문화적 몰이해를 드러내는 내레이션과 자막도 없다. 일하는 아빠와 일과 살림을 병행하는 엄마, 아빠가 그리운 아이들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에 대한 칭찬이나 못 먹는다고 비하하는 언행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11]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장면 분석

장면 1	장면 2
	
<p>장면 설명 : 아이들끼리 아빠 모르게 아빠의 직장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도로 소개.</p>	<p>장면 설명 :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아도 나서서 알려주는 한국인들의 모습.</p>
장면 3	장면 4
	
<p>장면 설명 : 경기 여파로 회사가 문을 닫아 자력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p>	<p>장면 설명 :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소개.</p>

3) TV 예능 프로그램

(1) JTBC 비정상회담 (방송정보 : 2014.07.07.~2017.12.04.)

① 프로그램 구성 :

남성 캐릭터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전략을 꾀한 스튜디오 토크 프로그램이다. 자칭 국경 없는 청년회라 하면서 사무총장 1명, 의장 2명의 한국인 MC와 12명의 고정 게스트가 출연한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각기 다른 대륙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12명의 출연진을 각국 대표로 호명하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를 넘어 보다 보편적인 주제와 때로는 급진적인 주제 - 동거, 성교육, 직장 내 성차별 등 - 를 망라한 토론을 진행한다.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다른 20대, 30대의 고민에 대해 세계의 시선을 모으는 것이 <비정상회담>의 주요 기획 의도이다.

② 긍정적 유형의 재현 : 공개적으로 차별 사례를 공론화시킴.

장면 1(2015.05.18. 46회)과 2(2014.12.01. 22회)는 혐오주의와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 상황과 해결책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내용이다. <비정상회담>은 토론 소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소개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비정상회담>의 토론형 진행 방식은 시청자들이 자칫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들을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 효과적이다. 이미 문화적 다양성이 자리 잡은 국가 출신의 출연자들은 자국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는 다양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법적 제재를 설명하고 이런 전달 방식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던 국가의 출연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상형의 조건으로 ‘고분고분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며, 나를 존중해주며, 집에서 살림을 잘하고, 나의 어머니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여자여야 하고 효심이 깊어야 한다.’고 밝힌 중국 대표 출연자에게 ‘비정상’이라고 말해준 것도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각국의 출연자들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 출연자 역시 여성의 부모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지를 묻자 매일은 아니어도 하긴 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2014.12.22. 25회). 이처럼 방송에서 재현되는 모습은 편견을 갖고 있거나 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림 12] <비정상회담> 장면 분석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 표현의 자유가 개인을 공격할 경우 독일에서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p>	<p>장면설명 : 현재 이탈리아의 유치원에 입학하는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은 인종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p>

(2)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방송정보 : 2011.12.04. ~ 방송중)

① 프로그램 구성 :

10여 명의 탈북자, 2명의 사회자, 4명의 한국 남성패널이 출연해 탈북자들의 북한 생활에 대한 소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형식의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를 표방하고 있으며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해서는 통일이라는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통해 점차적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임 밝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탈북여성들의 정체성은 북한에서의 가난한 경험과 억압적 북한사회에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서사와 재현 방식을 취한다. 출연하는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어려운 북한경제난으로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 위험한 탈북과정을 감행하면서 자유의 땅 한국에 온 이주자임을 강조하는데 외부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지속되어 북한사회가 굶주렸고, 이를 견딜 수 없어 선택한 생존형의 이주는 곧 시혜의 대상으로 고정된다.

② 긍정적 유형의 재현 : 북한의 현재 생활과 문화 비교를 통한 정보전달

장면 1, 2(북한 요리열전, 북식 대첩! 2017. 12. 03. 311회)에서는 북한의 요리가들이 만들고 한국의 요리가들이 평가하고 추천하는 음식 콘텐츠로 북한의 먹거리를 소개한다. 북한의 주식은 옥수수(강냉이)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음식의 소개가 한국사회에서 의미 있는 것이 북한음식은 슬로우푸드(slow food) 방식으로 만들어져 건강한 음식을 발굴한다는 점이다. 또한 분단사회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강조해왔다면 음식 등의 소재는 동질성을 찾는데 좋은 콘텐츠가 된다.

장면 3(2013.06.30. 81회)은 북한의 입대풍경이다. 북한은 군복무기간이 10년이므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모두 기차역으로 나와 대규모의 환송회를 한다. 이 때 김광석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가 북한의 민중가요로 알려져 있어 애창곡으로 불린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장면 4(2012. 11. 11. 50회)는 북한의 지역별 사투리에 대한 방송이다. 탈북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적응을 위해 북한 사투리를 고치려 노력한다. 하지만 한국에도 각 지역마다 고유한 사투리가 있듯 북한의 사투리도 소개함으로써 이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그림 13]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장면 분석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북한 4대 요리사 집안 모녀의 요리 대결! 북한음식 홍사면과 퓨전음식 강냉이 파스타의 대결에서 홍사면 승리</p>	<p>장면설명 : 탈북인 출신 북한요리 전문가들의 요리 대결 장면. '북한초계탕', '돼지코 조림' 등 다양한 북한의 건강 음식 소개</p>
장면 3	장면 4
	
<p>장면설명 : 북한의 입대풍경 입대하는 사람을 위해 친구, 친지들이 환송회를 한다.</p>	<p>장면설명 : 각도의 사투리자랑, 북한의 지역에 따라 다른 사투리 소개</p>

③ 부정적 유형의 재현 : 여성 출연자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써의 재현

장면1, 2는 북한의 겨울나기 편(2012. 12. 9. 53회)에서 북한의 추위를 설명한 출연자가 북한에서처럼 여러 겹 껴입기를 시연하는 장면이다. 북한의 추위를 이야기한 후에 출연자에게 스튜디오에 진열된 옷을 모두 입어보게 하고, 미니스커트 위에 바지를 덧입는 과정을 남성들과 출연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태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재연을 요구하였다.

다른 부정적 재현이 담긴 장면 3, 4는 북한의 여름나기 편(2015.07.12. 186회)으로 북한에는 냉방제품이 별로 없어 힘든 여름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북한에 해수욕장이 있고 실내 물놀이장이 생긴 것은 최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사회 전반에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일이 일반화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키니와 속옷 구별법이라는 주제를 통해 북한사회와 동떨어진 자극적인 소재로 남성 중심의 성적인 이야기를 이슈로 삼는다. 탈북인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에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남남북녀의 신화를 만들고 미녀와 여성성을 강조하며 짧은 스커트와 다리가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전반적인 남성 대상화의 시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4]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장면 분석 2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북한의 겨울추위가 혹독하므로 모든 옷을 꺼입고 다녀야 한다는 설명에 사람들 앞에서 옷을 꺼입어보도록 한다.</p>	<p>장면설명: 남성 패널들이 출연여성에게 겨울 옷입은 상태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과정 재현을 요구한다.</p>
장면 3	장면 4
	
<p>장면설명 : 북한사회와 관련이 없는 비키니를 이슈화. 비키니나 속옷 바람으로 돌아다녔을 만한 출연자를 추측하고 호명 유도.</p>	<p>장면설명 : 비키니와 속옷의 구분을 남성의 입장에서 설명하자 '명언'이라는 텍스트를 부여한다.</p>

(3) TV조선 모란봉 클럽 (방송정보 : 2015.09.12. ~ 방송중)

① 프로그램 구성 :

탈북자 10여명, 사회자 2명, 한국 남성 패널 2명으로 구성된 집단 토론 형식의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여성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과정 경험담이 중심 소재

이며, 남한 사회 및 문화 현상에서 느낀 이질감과 당혹감을 풀어내고 북한의 실제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언급하면서 ‘탈북자’와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담론 생성을 촉구한다. 탈북인에게 이주의 주체로 경험과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이야기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성성을 강조하는 틀에서 구성되는 특성을 띤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주로 자극적인 주제와 연결되어 북한 사회의 왜곡된 면을 강조하고 여성을 타자화하는 메시지로 귀결되는 구조를 취한다.

② 긍정적 유형의 재현 : 북한 놀이문화 소개를 통한 정보전달

아래의 장면들은 모두 평양의 놀이시설을 보여주는 내용(2017.11.28. 115회)이다. 북한에는 도시와 각 도별로 놀이공원이 있는데 그중 평양에 있는 개선청년놀이공원을 소개했다. 2017년 여름에 야간 개장을 통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도시와 지방간에 양극화가 심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양 주민들이 일상을 이루는 공간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논의로 볼 수 있다.

[그림 15] <모란봉 클럽>장면 분석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평양의 개선청년공원 북한의 놀이시설을 타며 즐거워하는 북한주민들</p>	<p>장면설명 : 불야성을 이루는 평양의 핫플레이스, 전기사정이 나아진 북한사회</p>
장면 3	장면 4

	
<p>장면설명 :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해 기념 사진도 일상화되고 있다.</p>	<p>장면설명 : 브랜드 체육복을 입은 여학생. 북한사회의 의복수준이 향상됨을 보여준다.</p>

③ 부정적 유형의 재현 :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통한 북한생활상 소개

먼저 장면 1, 2는 ‘북한의 19금 썰들!’(2017.08.08. 99회)이라는 주제로 방송된 장면이다. 출연자들은 북한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대신 성적인 농담은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란봉클럽에서는 성과 관련한 이슈를 통해 북한사회를 희화화 하거나 자극적인 이야기로 재연하기도 한다.

장면 3은 한동안 회자된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임지현 씨의 출연 부분이다 (<북한의 국경 그 사선의 비밀>, 2017.01.07. 69회) 재입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임지현은 17살 때부터 술장사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여성미를 극대화하는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방송 당시에는 자극적인 주제와 썸 여성으로의 자신을 드러냈으나 북한의 매체에 등장해서는 남한 방송에서의 언행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강요된 것임을 강조했다.

장면 4(2016. 10.15. 57회)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인신매매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출연자. 북중 간의 경계 넘기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는 일어날 수 있는 있는 일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신매매의 경험이 개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며 방송을 통해 얼굴과 함께 소개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낙인으로 작동하는 등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6] <모란봉 클럽> 장면 분석 2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농촌봉사를 갔을 때 봉사자들이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던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밝힌다.</p>	<p>장면설명 : 북한의 19금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높은 순위로 이야기한 사람을 이날의 1위로 뽑았다.</p>
장면 3	장면 4
	
<p>장면설명 : 연기를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하면서 '섹시'하고 '요염'한 춤을 선보인다.</p>	<p>장면설명 : 속아서 탈북했다는 출연자. 중국으로 가서야 인신매매 당했음을 알았다.</p>

(4)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방송정보 : 2015.02.07.~2016.04.29.)

① 프로그램 구성 :

JTBC <비정상회담>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친구집 습격 프로젝트'라는 수식어처럼 <비정상회담>의 캐릭터들이 회담에서 벗어나 외국 친구의 집으로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를 취한다. 기존 프로그램이 관광지나 오지를 담아냈던 것과 달리 이들은 일상의 문화체험에 방점을 두며 '차이' 혹은 '신비함'을 강조하거나 관광으로서의 '일시적' 체험을 넘어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생활상들을 체험한다. 총 62회차 13개 나라 및 도시(국내 포함,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부여,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대한민국 제주, 태국, 미국)를 여행하며 현지 문화를 다채롭게 담는다.

② 긍정적 유형의 재현 : 현지 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자막 활용

장면 1은 네팔의 마차푸차레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네팔어를 병행표기한 부분이다. 기존의 문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는 서구유럽권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 자국어가 별도로 있는 곳들은 해당 언어를 표기해왔다.

장면 2 역시 차별된 자막 활용에 대한 부분이다. 여행 프로그램에서 자막은 지식전달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유적지, 관광지, 축제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정리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는 여기에 더해 출연진의 질문이나 행동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많아 자막의 활용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고층된 전문 지식 외에 현지인이 아는 그대로 실제로 이용하는 정보들을 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의 폭이 깊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림 17]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장면 분석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 현지어로 유명 관광지명을 표기. 타프로그램에서는 영어 병행표기가 많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현지 언어 병행표기.</p>	<p>장면설명 : 여신을 숭배할 준비를 하기 위해 가족제품을 몸에 지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p>

③ 부정적 유형의 재현 : 사고의 과정이 생략된 타 문화의 수용

장면1(2015.05.16. 14회)의 경우는 네팔의 ‘쿠마리’ 문화에 대한 내용이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출연진 대부분이 같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출연진과 겹친다. 즉 먼저 <비정상회담>의 출연을 통해 친분을 쌓은 출연자들이 제작진과 새롭게 기획한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인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두 프로그램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의 캐릭터를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정상회담> 32회에서 거론된 ‘쿠마리’ 문화에 대한 해석이다. <비정상회담>에서 접했던 ‘쿠마리’ 문화에 대해 출연자들은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 받는 여아에 대해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존중할 수 있다는 측면

과 아동학대 측면의 두 가지 의견을 냈다. 그런데 실제 नेपाल을 여행하던 도중에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를 만난 이들은 ‘쿠마리’를 알현하는 의식을 큰 고민 없이 치러냈다. 앞서 방송된 <비정상회담>에서 출연자들은 ‘쿠마리’ 문화에 대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했음에도 그런 현지 문화를 직접 대면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는 인권침해인지 문화적 관습인지에 대한 고민 과정이 생략된 채 그저 쿠마리와의 만남을 ‘숨이 막힐 듯’ 하다고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대상국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출연자들은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후진국이라는 것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인터뷰에 등장한 모든 편견과 차이들은 이들이 실제 현지를 여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장면 2(2015.02.21. 3회)는 중국으로 떠난 출연자 중 한 명이 화장지가 없이 화장실에 가서 여유롭게 뒤처리를 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다른 출연자들이 중국 화장실 문화에 대해 우려하는 장면은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여행 전에 출연자들이 가졌던 편견은 편집을 통해 현지에 도착하는 동시에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것이다.

이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의 여행지를 둘러보거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의 한계는 수려한 자연 경관, 찬란한 문화유산, 친절함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불편함은 소거되어 버린다. 여행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해와 공감의 사라진 여행 프로그램은 결국 오락거리만 제공한다.

[그림 18]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장면분석 2

장면 1	장면 2
	
<p>장면설명 : नेपाल의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를 만난 출연자들이 नेपाल식 인사를 하고 소원을 비는 모습.</p>	<p>장면설명 : 변기와 휴지가 없는 중국에서 나름대로 뒤처리를 한 출연자.</p>

4) 광고

(1) 다문화 인식 개선 공익광고

① 편견에서 시작된 친절은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2017)

이 광고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다룬다. ‘김치’라는 같은 대상을 두고도 다른 질문을 한다는 점, 인종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이국적인 외모는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갖는 또 다른 문제는 이주민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의 차별이 대상의 차이에 대한 차별이 아닌 스스로의 편견에 따른 차별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광고는 질문 자체를 차별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이주민 가정의 2세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보는 선주민의 선입견을 성찰시키는 긍정적 유형의 광고다.

[그림 19] <편견에서 시작된 친절은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장면 분석

구분	구성 내용	
장면	 <p>김치는 매워서 못 먹어요</p>	 <p>그럼 혹시 김치 먹음 잘 알아? 민중이가 먹기에는 조금 맵지?</p>
	 <p>“한국음식은 마음 텐데 잘 먹을 수 있을까?”</p> <p>8세 윤이</p> <p>저는 떡볶이를 잘 먹는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장면에 주셨어요</p>	 <p>“너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어?”</p> <p>10세 민우</p> <p>자꾸 어디에서 왔냐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신기해요</p>
내레이션	<p>(자막) 당신이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가요?</p> <p>하민아 안녕. 잘 지냈어? / 네. /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뭐하면서 놀아? / 만들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면서 놀아요. /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가장 재밌어? / 체육이요. / 요즘 엄마한테 들으니까 편식한다며? 김치는 잘 안 먹어? / 김치는 매워서 못 먹어요. / 김치도 잘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쑥쑥 잘 크지. / 네.</p> <p>민중이는 혹시 한글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없어? /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 그</p>	

럼 공부할 때 한국말을 도와줘야할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필요하지는 않아?/ 네,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 공부 잘해요. /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불편한 점은 없
고? / 불편한 점은 없어요. / 아까 민중이 보니까 밥도 엄청 잘 먹던데, 한국음
식은 자주 먹어? / 매일매일 먹어요. / 그럼 혹시 김치 먹을 줄 알아? 민중이가
먹기엔 조금 맵지? / 아뇨, 매워도 맛있어요. / 민준이는 김치도 잘 먹는구나.
(자막) 혹시 아이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떡볶이를 잘 먹는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칭찬해주셨어요. / 영어도 잘하
고 국어도 잘한다고 애들이 부러워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한 건데. / 저는 한국
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자꾸 어디에서 왔냐고 한국어를 잘한다고 신기해해요.
(내레이션) 아이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당신의 시선입니다.

② 다양한 대한민국(2015)

이 광고는 보편적인 이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공존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는 주제가 잘 드러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자의 방식(문화)을 담은
다양한 뜨개조각으로 다리를 장식하면서 아름다움과 함께 소통이라는 의미
를 강조하고 있다. 이주민 집단을 특정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른다는 점과
'소통의 다리'라는 상징을 통해 다문화 지향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림 20] <다양한 대한민국> 장면 분석

구분	구성 내용	
장면		
		
내레이션	<p>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 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 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자막) 다문화 다리 프로젝트 :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1000명의 사람들이 뜨 개조각을 만들어 청계천에 다문화다리를 완성했습니다.</p>	

(2) 특정 계층과의 화합을 유도하는 공익 광고

① 북한이탈주민, 우리의 착한 이웃입니다(2014)

광고 문구의 착한은 ‘선하다’라는 뜻과 ‘한국에 도착한’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착한(선한) 이웃’이라고 소개하는 이 광고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는 대신 그저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착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준다는 시혜적 입장으로도 읽히는 모호함이 있다.

[그림 21] <북한이탈주민, 우리의 착한 이웃> 장면 분석

구분	구성 내용	
장면		
		
내레이션	<p>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상희씨도, 항상 남 돕기를 좋아하는 착한 준영이도, 늘 남을 위해 앞장서는 착한 현숙씨도,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우리의 착한 이웃입니다.</p>	

② 다문화 가족, 소중한 인재(2014)

광고에 등장하는 최진주를 비롯한 재능 있는 인재들을 국가대표로 키운다는 메시지는 한국 선주민이 아닌 이들에게는 실력 있는 사람만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조건부 승인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에 득이 되어야 국민으로 수용된다는 논리는 극단적인 국가주의적 사고이며, 정부 광고에서 이처럼 국민을 국가의 도구로 보는 시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런 인식이 당연해 진다면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2세대들은 평범한 개인으로 사는 것에 불편함

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22] <다문화 가족, 소중한 인재> 장면 분석

구분	구성 내용	
장면		
		
내레이션	<p>태어난 나라는 달라도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온 클라우디아 풀러 최진주입니다. 미래를 향해 꿈과 열정을 키우고 있는, 제 꿈은 대한민국을 빛낼 국가대표입니다. 다문화, 다인재, 다재다능 대한민국, 같이 가요.</p>	

③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2009)

우리글이 서툰 준호 ‘엄마’를 위해 알림장을 읽어주는 민지 ‘어머니’, 라는 멘트에서 호칭의 구분은 존칭의 당사자를 시혜자의 위치에 둔다. 결국 결혼 이민자인 준호 ‘엄마’는 민지 ‘어머니’보다 계급적 서열이 낮아지는 셈이다. 또한 알림장 등 아이 양육과 학습 지도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몫인 것인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준호 엄마가 한글에 서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은 없고 이 문제를 ‘이웃’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덧붙여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12월)이라 하더라도 화면 톤을 조절하여 이주여성과 선주민 여성의 피부 차이를 은폐하고 있는데 순혈주의에 익숙한 선주민들에게 다름에 대한 불편함을 완화시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종주의를 강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림 23]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장면 분석

구분	구성 내용	
장면		
내레이션	<p>“틀린 것 열 번씩 연습하기.” 아직 우리들이 서툰 준호 엄마를 위해 날마다 알림장을 읽어주신다는 민지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있어 준호도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자랍니다. “언니 고마워요.”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p>	

3. 모니터 분석 결과

1) TV 드라마 프로그램

TV드라마 부문에서 과거에 많이 지적되었던 인종적 차별, 문화적 왜곡, 종교적 편견, 몰이해 등의 구체적인 재현 오류는 문제시될 만큼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분석대상이 되었던 두 편의 드라마처럼 다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대상 자체의 축소에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 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은 제작 당시 충분한 자체 모니터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상 하나의 장면을 떼어 분석하는 형태는 분석을 위한 분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한 전체적 흐름을 검토해야 한다. 드라마의 재현 방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단순히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재

현 방식만 보더라도 차별적 시선을 환기시키기 위한 사실적 재현인지, 정형화된 오류를 답습하는 형태의 재현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기를 목적으로 한 사실적 재현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표현을 권장한다. 피부색만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들,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인 남편, 순종하고 희생적인 결혼이주여성으로 재현되는 내러티브는 진부한 전개이다.

2)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연성화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많았다. 선주민의 시각이 지배적인 담론으로 제시되는 내레이션의 내용과 시점을 통해 재현의 의도가 드러나므로 제작진의 다문화 감수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서 내레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재현과 부정적 유형화의 대상이 이주민보다는 선주민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문화 고부열전>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야 될 출연자는 시어머니 즉 선주민이었고 <이웃집 찰스> 역시 음식 수용 기준을 통한 동화주의를 강조하는 이들도, 성 역할이 고정된 유교적 사고방식을 일반적으로 강요하는 주체도 선주민이었다. 상대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한국의 선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의 제작 방향 설정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TV 예능 프로그램

TV예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의 접점을 늘려왔다. 버라이어티쇼 형식이나 토크쇼, 최근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여행 형식까지 더해져 이주민에 대한 대중들의 낯설음을 중화시켜가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주민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큰 고민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가벼움 때문에 프로그램 소재에 대한 반성 없는 접근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공존한다. JTBC<비정상회담>의 ‘기미가요 논란’과 MBC<세·바·퀴>의 ‘시커먼스 분장’ 모두 녹화 방송이었지만 제작진조차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물론 명백한 인종차별적 퍼포먼스였던 ‘시커먼스 분장’과 반일감정에 따른 논란이 일었던 ‘기미가요 논란’은 그 성격이 다르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청자의 반응이다. 다문화 사회를 지향

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방송된 아이템이 반일 감정에 의해 흔들릴 만큼 아직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고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을 공론화시킨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라는 점이다.

시청자는 가볍게 즐길 대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작진은 출연자의 토크 소재, 재현 방식, 자막 활용 등 모든 부분에 민감한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4) 광고

그 어느 방송 콘텐츠보다 공익광고는 다문화수용성,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광고 분석 결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공익광고는 편견을 강조하는 틀에서 탈피하여 인권적인 감수성을 담지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것은 초기 다문화사회에 대한 광고가 인종과 문화를 차별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시야에 대한 학계의 비판과 민감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담론이 미덕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순혈에 대한 강조는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고 다문화수용에 대한 모순을 담지 한다. 또한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한국문화로 동화를 강조하는 광고는 상호문화에 대한 수평적인 시야를 담보하지 못하며 문화다양성이나 수용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제작 시에 타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관점이 필요하다. 방송콘텐츠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키고자 차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인이며, 북한이탈주민들도 하나원 교육을 이수하는 순간부터 한국인이다. 물론 구별과 분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세우자는 취지의 대상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소수자 집단의 부족함이 부각되거나 다수의 시각에서 소수자를 규정하는 것은 왜곡과 다른 차별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이해, 수용성과 인권적 감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제작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5장. 결론

방송콘텐츠 제작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는 본 안내서는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제작현장에서 참고 할 만 한 해외 방송

가이드라인 사례, 국내 심의사례 및 모니터분석을 모델로 제시했다. 일찍이 이민자들이 함께 살아온 해외의 방송환경과 달리 한국방송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이는 비교적 최근의 사회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협약이 비준되었고, 외국인의 증가로 다양한 민족, 인종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수용성을 제고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단순히 형식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주민과 이주민 혹은 소수자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인권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인식제고를 추구한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이주인에 대한 차별은 뿌리 깊은 민족단일의식에서도 작동하지만, 특히 제작현장에서의 차별적 재연은 다문화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식의 부족과 인권 의식의 부재에 의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제작자들의 다문화수용성은 더욱 요구된다. 방송영상에서 지켜져야 할 다문화수용성의 기본 정신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의 주체들을 다루는 제작 상황 시에 이 책에 제시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 분석 결과 사례를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현민(2015). 다문화가정의 사소한 갈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179-185.
- 공수진·박민영·이동호(2011). '보편적 인권과 주권국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기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공익과 인권』 9(0), 3-38.
- 권금상(2013).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이주여성' 재현의 사회적 의미. 다문화 사회연구, 6(2), 39-81.
- 마정미(2010). TV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찰. 한국광고홍보학보, 12(4), 223-258.
- 류찬열(2009). TV 드라마에 재현된 국제결혼과 혼혈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 7-26.
- 문영숙(2014). 텔레비전 광고의 소수 인종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보, 23, 139-173.
- 박명규 외(2016). 『2015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평화통일연구원.
- 박미경·이현울 (2017). 가족주의 관점에서 본 KBS<이웃집 찰스>의 이주민 가족 재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12-24.
- 박선옥·이윤정 (2015). <비정상회담>의 다문화 이해 양상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19, 77-112.
- 박성혁 외(2016).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 파주:집문당.
- 방송통신위원회. 캐나다 방송심의 규정집, 2012.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 관련 법령·규정, 210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6.
- 심훈(2012).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다문화 방영물 서사 분석. 한국언론학보, 56(4), 184-209.
- 심훈(2013). 다문화 휴먼 다큐멘터리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27(4), 131-167.
- 이영주(2006). "영국과 캐나다의 문화다양성," 전규찬 외 『글로벌시대의 문화다양성』(서울: 2006)
- 안상수 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서울: 여성가족부.

- 조진희(2012). 한국영화, 이주여성을 들여다보다. *언론학연구*, 16(1), 379-404.
- 주혜연·노광우(2013). 드라마 속에 재현된 외국인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만화 애니메이션 연구*, 335-361.
- 최윤철(2016). 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일감법학*』 제33호, 505-532.
- 홍지아·김훈순(2010). 다인종 가정 재현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한국방송학보*, 24(5), 544-583.
- 황정미 외(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우섭(2014). 『방송과 문화다양성: 한국 다문화지형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과주: 한울아카데미.
- 프랑수아 드 베르나르(2005). 김창민 외 역, 「문화다양성」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 서울: 한울.
- Bandura, A.(1989). *Social cognitive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Greenwich, CT: JAI Press.

<부록>

다문화 관련 법제

1. 국제법

1)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comprehensive) 성격의 국제인권조약이다. (공수진 외, 2011). 2015년 기준으로 46개국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미국 등 주요 이민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박성혁 외, 2016).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지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호의 강도도 높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과 제1부부터 제9부까지 93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6조)는 협약이 적용되는 이주노동자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제2부(제7조)는 권리향유에서의 비차별의 원칙을, 제3부(제8조~35조)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미등록체류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향유하는 인권을, 제4부(제36조~56조)는 증명서를 소지하였거나 적법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만 인정되는 기타의 권리를, 제5부(57~63조)는 국경근로자, 계절근로자 등 특별한 범주에 속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제6부(제64조~71조)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제적 이주에 관해 건전하고 형평에 맞고 인도적이며 적법한 상태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7부(제72조~78조)는 협약의 적용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즉 시행조치를, 제8부(79~84조)는 다른 협약과의 관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일반조항을, 제9부(제85~93조)는 협약의 효력발생, 가입,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

<p>균등 대우의 원칙(제2부)</p>	<p>“이 협약의 체결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서 자국의 영역 내에 있거나 자국의 관할권에 복종해야 할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에 대하여, 성·인종·피부색·언어·종교 또는 신조·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이나 종족이나 사회의 출신·국적·연령·경제적 지위·재산·혼인상의 지위·출생 기타의 지위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이 협약 가운데 정해진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것을 약속한다.”</p> <p>→ 민족적 출신뿐만 아니라, 국적에 의한 차별도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음.</p>
<p>불법체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 보호(제3부)</p>	<p>출국의 자유, 생명권(제9조),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제10조), 노예·강제노동의 금지(제11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생활·명예 및 신용의 보호(제14조) 등, 신체의 자유 등(제16조, 제17조 참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8조, 제19조), 증명서, 여권의 보호(제21조), 강제퇴거(expulsion, 제22조), 근로조건에 대한 균등대우(제25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긴급의료에 대한 권리(제27조, 제28조), 자녀의 권리(제29조, 제30조),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제31조),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제40조), 사전고지를 받을 권리(제33조, 제37조)</p> <p>→ 대체로 세계인권선언, UN인권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p>
<p>합법체류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제4부)</p>	<p>일시 출국의 권리(제38조), 이동, 주거선택의 자유(제39조), 결사에 대한 권리(제40조),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제41조), 가족의 결합(제44조), 직업 선택의 자유(제52조)</p>

2)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여 12월 20일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구속력 아래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권리유형	내용과 조항
생존권	생명의 존중,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제6조),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제24조)
보호권	-차별에 관한 협약 : 비차별(제2조), 생명과 국적(제7조), 장애아동(제24조), 원주민아동(제30조) -착취/학대 관련 협약 : 부모와의 분리 및 면접교섭권(제9조), 가족의 재결합(제10조), 불법 해외 이송과 미귀환(제11조), 사생활(제16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제19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제20조), 입양(제21조), 정기적인 심사(제25조), 아동노동자(제32조), 약물/학대(제33조), 성적 착취(제34조), 아동의 매매/유괴(제35조),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제36조), 고문과 자유의 박탈(제37조), 재활혜택(제39조), 미성년자범(제40조) -위기/응급 상황 관련 협약 : 가족의 재결합(제10조), 난민아동(제22조), 정기적인 심사(제25조), 전쟁(제38조), 재활혜택(제39조)
발달권	개인의 발달(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정체성(제6조, 제7조), 가족(제9조, 제10조, 제11조), 아동의 의견(제9조, 제12조), 표현의 권리(제12조, 제13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의 자유(제15조), 정보와 자료(제17조), 건강과 신체적 발달(제24조), 교육(제28조, 제29조), 놀이와 오락 활동(제31조), 문화활동의 참여(제31조)
참여권	적당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17조), 부모의 1차적 양육책임과 이에 대한 국가의 원조(제18조),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42조)

2.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1) 국적법

국적법은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우리의 국적법은 국적 부여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적법의 이러한 원칙은 이주민 통합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등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인지와 귀화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적법 체계에 의하면 ‘외국인’은 귀화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없다.

■ 국적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국 적 법	제1조 목적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14조의2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 명령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14조의3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14조의4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제6조 간이귀화 요건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제7조 특별귀화 요건	제17조 관보 고시
	제8조 수반 취득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20조 국적 판정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2)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사람은 이 법률에 따라 출국과 입국을 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수가 많지 않아서 이 법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외국인의 입국과 방문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 되었다(최윤철, 2016, p.509)

현재의 출입국관리법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체류 외국인관리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관리가 주요 목적과 내용을 이룬다. 11장으로 구성된 전체 법률 중 제1장(총칙)과 제2장(국민의 출입국),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제7장과 제8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장의 대부분이 외국인 관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과 관련하여, 사증, 입국심사, 입국금지 대상, 체류 자격, 상륙허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다(제7조~제16조의2). 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 고용의 제한, 외국인 고용의 신고 의무,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제17조~제30조). 여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을 마련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강제퇴거의 대상자, 관련 조사 및 심사, 보호 및 출국권고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을 자세히 규정한 제6장은 2010년 개정해서 자세하게 규정된 후, 2014년 개정에서 인권존중(제56의3)과 적법절차를 강화하였다(최운철, 2016). 한편, 제8장의2에서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출입국 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6장 강제퇴거 등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2절 조사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절 출국권고 등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3. 교육 관련법

1)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은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다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제4조이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기본법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동법의 목적, 교육 이념 등을 담고 있다. 제2장 교육당사자에서는 실제적인 교육 당사자인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교육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이념 제3조 학습권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7조 교육재정 제8조 의무교육 제9조 학교교육 제10조 사회교육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3장 교육의 진흥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제17조의5 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 평화적 통일 지향 제18조 특수교육 제19조 영재교육 제20조 유아교육 제21조 직업교육 제22조 과학·기술교육 제22조의2 학교체육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 학습자 제13조 보호자 제14조 교원 제15조 교원단체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조의2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6조의3 교육 관련 통계조사 제27조 보건의 복지 증진 제28조 장학제도 등 제29조 국제교육

2)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중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2016년 7월 28일 시행된 2016년 1월 27일 개정에서 나타난다. 이 개정은

현행법 상 외모·언어·문화 차이로 국내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결정되는 점,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 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 등에 연루될 경우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여건이 안 되는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 가운데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제60조의2제1항). 또한 외국인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63조제3항 신설).

■ 초·중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초·중등 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의 종류
	제3조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5조 학교의 병설
	제6조 지도·감독
	제7조 장학지도
	제8조 학교 규칙
	제9조 학생·기관·학교 평가
	제10조 수업료 등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의2 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의무교육
	제13조 취학 의무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2절 교직원
	제4장 학교
	제3절 삭제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7절 특수학교 등
제8절 각종학교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제60조의4 교육비 지원	
제60조의5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7 조사·질문	
제60조의8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9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0 비용의 징수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제1절 통칙	제66조 청문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67조 벌칙
	제68조 과태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다문화 관련 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 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4. 노동법 및 사회보장 관련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로서 가족의 건전성과 지속성은 우리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자, 우리 사회의 영속성을 위한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다문화 가족 지원법 (17개 조항)	제1조 목적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제2조 정의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4조 실태조사 등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17조 과태료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동법은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도모하고자 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23개 조항)	제1조 목적	제13조 영주권자의 처우
	제2조 정의	제14조 난민의 처우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제17조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의 처우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7조 업무의 협조	제19조 세계인의 날
	제8조 외국인정책위원회	제20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제9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22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23조 정책의 공포 및 전달
	제12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었다. 동법은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등록체류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근로기간 및 체류기간 제한, 사업장 이동 및 변경 제한, 고용자의 관리 책임 등의 규정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관리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2개 조항)	제1조 목적	제18조의4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5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포 등	제22조 차별 금지
	제6조 내국인 구인 노력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24조의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9조 근로계약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0조 사증발급인정서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제26조의2 관계 기관의 협조
	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등
	제13조 출국만기보험·신탁	제27조의2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13조의2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제27조의3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 건강보험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5조 귀국비용보험·신탁	제29조 벌칙
	제16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30조 벌칙
	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31조 양벌규정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32조 과태료
	제18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3 재입국 취업의 제한		